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김한규·정준호·이성윤

황운하 · 김종민 · 위성곤

김용민 · 장철민 · 한준호

서미화 • 이기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 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'가상자산 사업자'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 3).

또한,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 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.

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.5배,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,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,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"공공기관 및 금융회사"를 "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의결을 거쳐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 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		
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			
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			
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			
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			
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			
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			
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			
로 정하는 <u>공공기관 및 금융회</u>	<u>공공기관, 금융회사</u>		
<u>사</u> 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	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		
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	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		
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	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		
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	<u>산사업자</u>		
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			
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			
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			
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			
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			
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			
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			
를 적용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32조(보험금의 계산 등) ① (생 제32조(보험금의 계산 등) ① (학			

략)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당 국내총생산액,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<u>대</u>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 <단서 신설>

행과 같음)

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-----

③ • ④ (생 략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